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7호)

◦ 2026. 9. 1.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8. 14.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8. 18.

다. 상 정 일 자 : 2026. 9. 1.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국장)

-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서비스 제공기능, 사례관리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 경제적 효율성, 사회복지 전문성 및 기술활용성이 높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여 상시·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 이에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최충열)

▣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배경 및 운영 현황

1.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의 정책적 배경

-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가족 등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개별 대상별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 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사례관리와 지역 내 복지자원을 연계·조직화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복지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1월 19일 개관한 이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현재에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주요 사업 내용

-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례관리기능, 서비스 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사례관리기능으로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개입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공공·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하고 있으며,

- 서비스 제공기능으로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 지역조직화기능으로 지역 내 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주민교육 및 자원봉사자·후원자 개발·관리 등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3. 지역사회 복지거점으로서의 기능

- 이와 함께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특정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및 일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복지·교육·문화·주민편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지역복지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 특히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 내 복지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 주민참여 및 자원개발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연결하고 주민의 복지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 현재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서초구 남부순환로 2610(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712.8㎡규모의 구립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경로식당, 교육·문화공간, 상담 및 프로그램실, 대강당,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총 25명의 종사자가 관장,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 안전관리인, 안내·접수, 조리사, 매니저, 독서실 및 카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연간 이용인원은 123,158명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복지·문화 및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 또한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초 위탁에 이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동의안은 현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종합하면,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축적된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 및 주민조직화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거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 본 동의안은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재위탁에 의한 위탁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행 방식 중 민간위탁 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에 해당하고 있으며,
-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기타 사회복지증진 사업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련 분

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구조에 있으며,

- 이러한 시설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과 더불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이 함께 검토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특히 가족기능강화 및 지역사회보호 등 지원 서비스 분야는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 체계가 요구되는 영역으로서 운영 방식 선택에 있어 이러한 요소가 고려되는 정책적 환경에 있고,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등 제도적으로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 방식이 활용될 수 있는 구조에 있고,
-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의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운영 주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1) 및 제5항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³⁾ 및 제21조의2제1항⁴⁾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공신력·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⁵⁾에서는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을 구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3)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4)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제3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22.>
[별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제3조 관련)

주관부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초구 신반포로33길 22 (잠원동)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서초구 남부순환로 2610 (양재동)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서초구 바우뚝로7길 11 (우면동)
	사회복지시설	바우뚝복지문화회관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서초구 바우뚝로 43 (우면동)

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⁶⁾에서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정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와 같은 조례 제5조제1항⁷⁾ 및 제3항⁸⁾에서는 구의회 동의 및 재위탁·재계약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서초구립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추진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동의안 주요 내용 등

- 위탁시설의 인적·물적 현황은 아래표와 같음.

시설개요 및 인력현황				
시설개요 ○ 관 장 : 박대회 ○ 위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대표 김종민)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 주요사업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사회복지증진 사업 등				
○ 시설별 세부현황				
위치	층별	면적(m ²)	주용도	소유자
남부순환로	-	3,712.87	-	서초구

- 6)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7)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8)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치	층별	면적(m ²)	주용도	소유자
2610(양재동)	지하1층	674.5	행복밥상 우산수리센터 지하주차장 기계실 발전실 기자재실	
	1층	614.3	희망드림카페, 양재1동 민원분소, 어린이집	
	2층	614.3	작은어울림, 직원휴게실, 음표실(피아노실), 요리공간, 마음키움실	
	3층	614.3	관장실, 사무실, 상담실, 미래자리교실, 꿈키움실, 채움자리, 한마음공감센터	
	4층	597.7	큰어울림, 문화예술실, 다목적1실, 다목적2실, 다목적3실	
	5층	597.7	독서실(북휴게실, 소통열람실, 정기열람실(여성전용/ 남성전용/공용), 일일열람실, 커뮤니티 A/B/C)	

□ **인력현황**

○ **종사자 현황**

(2026. 8월 기준)

계	관장	부장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	안전관리인	안내접수	조리사	매니저	
									독서실	카페
25	1	1	3	3	10	1	1	1	3	1

-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2026. 12. 31. 기존 위·수탁 협약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9)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형태의 “재위탁”에 해당하고, 같은 조례 제5조제3항10)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안이며,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11)에 따르면 사회복지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11. 5., 2020. 1. 3.>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 법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사항 역시 같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항¹²⁾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고,

-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¹³⁾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 의견을 거쳐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6년 위탁금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 1,354,604천원 (민간위탁금)
※ 2026년도 민간위탁금 기준으로 추계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세부 내역	
'26년 민간위탁금액	1,354,604	인건비	1,101,185
		운영비	163,005
		사업비	90,414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11. 5., 2020. 1. 3.>

- 1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 13) 제6조(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인력 운영의 적정성
 3.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4.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재위탁 관련 참고사항

○ 예산 및 집행현황(2022년~2026년)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		세출	
연 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2022	2,220,000	2,225,249	2,220,000	2,034,466
2023	2,208,780	2,199,368	2,208,780	2,005,742
2024	2,214,474	2,205,542	2,214,474	2,027,914
2025	2,107,258	2,096,328	2,107,258	2,005,542
2026	2,103,209	-	2,103,209	-

○ 사업추진 실적

현재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 불교조계종봉은”의 주요 사업성과(개선실적)는 아래와 같음.

사업성과(개선실적)		
	구 분	사업추진 결과 우수성과(2022~2025)
사업 추진실적	사례관리	○ 취약계층 발굴체계 강화 및 통합사례관리 실천 확대 (2022~2025) -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 (152회) : 홍보물 배포(55회), 소식지 및 온라인 실천 게재(82회), 아웃리치 활동(15회/105개소) - 통합사례회의 (48회), 동행방문 및 민관협력 활동 (33회) - 사례발굴/접수 (156명) (2022년 27명, 2023년 54명, 2024년 33명, 2025년 42명) ○ 취약계층 맞춤형·긴급 지원 확대로 위기해소 및 일상 회복 지원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10명) / 2,000만원 (2022) - 희망온돌 위기가구 지원사업 (52명) / 4,573만원 (2022~2025) -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 (41명) / 6,920만원 (2022~2025) - 초록우산 특별지원, 인재양성 아이리더 사업 (83명) / 46,840만원 (2022~2025) - 내·외부 정기 결연후원 (652명) / 6,360만원 (2022~2025) - 서초구 걱정해결사업 (45명) / 10,000만원 (2024~2025)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구축 - 주민교육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모임 활동 ‘똑똑한 양재’ (8회/ 41명) (2023) -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양재2동 나혼자 산다’ (2회/ 14명) (2024) - 사회적 고립가구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고립가구 전담기구 사업’ 운영 (2025)

	구 분	사업추진 결과 우수성과(2022~2025)
사업 추진실적		: 고립가구 접촉(446명), 상담/육구분석(30명), 맞춤형 서비스 연계(379명), 커뮤니티 모임(41명)
	서비스 제공	○ 가족관계 증진 및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확대 - 부모 역할 인식 및 양육 역량강화 교육 「부모가 처음이라서」(12회/ 58명) (2022) - 양육자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내맘대로 일상탈출」(11회/ 68명) (2022) - 아빠 양육참여 프로그램 「아빠 愛 발견」(24회/ 256명) (2022~2023) - 부모-자녀 소통강화 프로그램 「우리아이 마음톡톡」(43회/ 495명) (2022~2024) - 또래관계 형성 및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놀이에 반하다」(31회/ 229명) (2022~2023) - 내곡동 저소득 아동 돌봄지원 프로그램 「쑥쑥이 친구들」(84회/ 825명) (2022~2025) - 코로나 정서취약계층 일상회복지원 사업 「우리들의 해방일기」(54회/ 385명) (2023) - 가족나눔(봉사) 프로그램 「우리가족 나눔 토크」(11회/ 205명) (2025) ○ 지역주민 학습 욕구 및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022~2025) -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49,161명) / 28개 강좌(39개반) - 노인 여가문화교실 양재실버 아카데미 (65,528명) / 12개 강좌(18개반) ○ 문화복지사업 다각화를 통한 주민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 증진 - 양재실버아카데미 나들이(231명), 개강식 (350명), '감동나눔 예술제' (820명) (2023~2025) - 취약계층 감면지원(2,015명), 일일특강인권교육 수강생 이벤트 등 문화복지사업 (52,618명) ○ 지역사회보호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일상·여가·정서 지원) - 경로식당 확대 운영(주 5회 → 주 6회) (2023~) - 밀반찬 자부담 대상 확대 (2022년 446명 → 2025년 913명) ** 서초구 무료급식 수행기관 중 유일한 자부담 서비스 제공 - 어르신 나들이 (4회/ 48명), 효(孝) 행사 (6회/ 297명), 생신잔치 (49회/ 246명) (2022~2025) - 어르신 문화 활동 「한낮의 문화산책」(9회/ 56명) (2025)
	지역조직화	○ 민관협력 기반 지역복지체계 강화 - 양재2내곡권역 민관협업사업 (228회/ 9,157명) (2022~2025) : 협업기관 2022년 16개소 → 2025년 20개소 확대 : 정기·수시회의(79회), 지역특화사업(119회), 복지상담소, 골목캠페인 등 연합활동(30회) - MOU 체결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 기반 확대 (35건) (2022~2025) ○ 주민주도 사업 확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가정의 달 맞이 가족감동나눔 페스티벌 '서초 콕 캄스' (3건/ 3,056명) (2023~2025) ※ '양재드림DAY' 1인 취약가구 기부 물품 연계 (2회/ 71명) (2024~2025) - 내곡동 감동나눔 페스티벌 '내곡담은 축제' (3건/ 705명) (2023~2025) - 전통장 매개 지역주민 모임 '양2, 사랑 노느매기' (38건/ 555명) (2022~2025) - 주민주도 네트워크(주민모임/주민동아리) (469건/ 2,059명) (2022~2025) ○ 지역자원 연계 및 나눔 문화 확산 (2022~2025) - 다변화된 형태의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1,079건/ 8,579명) : 대학생 서포터즈 및 봉사활동 동아리 운영 (84건/ 268명) : 지역사회봉사단(풍선장미, 모심약손, 테이핑 봉사단 등 9개 봉사단) (1,251명) - 기부 이벤트 및 온라인 모금 등 후원자 개발 (303건/3,727명) : 개인후원자(508명), 기업 및 단체 후원(202개소) / 약 7억 9,862만원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지도점검)

구청에서 실시한 시설관리, 사업 운영, 종사자 채용 관리 및 직원 복

무상항, 예산회계 관리 등 지도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고, 사건사고 현황(2025~2025)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보임.

대상연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물품·공사 등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2023년부터 복지관 홈페이지에 1인 수의계약건에 대한 정보 누락없이 게시
	무료급식 납품업체 계약절차 미흡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과 실적에 관한 사항을 중복으로 제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체결 누락, 이후 업체 선정시 상기 내용 반영하여 공고하였으며 2023년 무료급식사업 이행 보증보험 증권 가입완료
	재원별 예산관리 미흡	자부담 사회보험료를 보조금 재원으로 잘못 처리하였으나 자부담으로 수정처리 완료
2023년	계약 갱신시 수의계약 규정 위반	2022년 계약과정에서 추정가액 50,000천원선으로 판단하여 체결 후 2023년 계약갱신하였으며 이후 재무자료 확인결과 계약금액 61,498으로 확인됨. 25년부터는 급식납품업체 전자공개 입찰 진행 중
	가결산서상 예산 초과 지출	2023년이 아닌 2024년 가결산서상 일부 사업비 초과 집행된 부분에 대해 초과 집행한 것으로 지적, 당해 추경에 초과지급분 추가편성하여 처리
2024년	독서실 무기계약직 종사자 계약 기간 오류	계약관계 재고지와 계약서 재작성 요구하여 조치완료
	비품대장 및 폐기 내역 불명확	2024년 폐기물품 확인하여 비품대장 재입력 완료
2025년	가족수당 과소지급	일부 대상자의 부양가족 반영이 누락, 현재 소급지급 진행중이며 26.08.21까지 조치완료 예정

○ 민간위탁 성과평가

- 시설·안전 및 인사관리 부문에서, 자체 안전 매뉴얼 수립 및 교육·훈련 등 시설 안전관리와 환경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공정한 채용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만 육아휴직 등의 영향으로 평균 근속률이 52.6%로 다소 저조하여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고,
- 재정관리 부문에서, 전반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대비 사업비 비율 및 외부 자원금 개발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 조직역량 및 인권·네트워크 부문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과 주민

참여가 활발하고,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원·이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시설 자체 예산을 활용한 직원 교육 확대 등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 사업 수행 및 프로그램 운영 부문에서, 심층 사례관리 및 대상자 발굴 등 3대 영역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다만 AI·키오스크·1인 미디어 등 최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이 부족하여, 변화하는 지역사회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평가위원들의 아래와 같은 총평이 있었음.

총 평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평가기간 동안 시설 관리를 위하여 자체 안전 매뉴얼을 수립하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과 시설환경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인사 관리 측면에서도 공정한 채용과 직원 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음. 그러나, 잦은 육아휴직 등의 요인으로 평균 근속률이 52.6%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난 바, 향후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예산대비 사업비 비율과 외부 자원금 개발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조직역량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및 주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종사자들의 높은 전문성과 더불어 직원 및 이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돋보임. 다만, 시설 자체 예산 투입을 통한 양질의 직원 교육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사업 분야에서는 심층 사례관리의 실행과 발굴 등 3대 영역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AI, 키오스크 이용, 1인 미디어 등과 관련된 신규 사업의 도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변화되는 지역의 요구에 긴밀히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

- 그 외에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는 전반적으로 모범적인 양호한 관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92.75점이라는 탁월한 평가를 아래와 같이 받은바 있음.

평가결과

□ **평가점수 : 92.75점**

※ 평가분류 :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60점 이상), 부진(60점 미만)

※ 75점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 재계약 배제

○ 상세 평가점수(3개 분야, 8개 영역, 20개 지표)

평가분야	배점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평 점
관 리	35	32	32	29	32	31.25
조직역량	40	37	39	38	40	38.5
사업역량	25	21	25	23	23	23
총 점	100	90	96	90	95	92.75

■ 민간위탁 적정성

- 본 동의안의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 사무를 살펴보면, 시설 관리(시설물 유지보수, 하자관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사업운영(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사업 등), 물품관리 등 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사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러한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의 공공성 확보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 및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 아울러 위와 같은 위탁사무는 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 발굴체계 강화와 통합사례관리, 가족관계 증진 등 프로그램 개발, 문화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는 업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수행에는 효율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한편 민관협력 기반 지역공동체 강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자원 연계 및 나눔문화 확산 등 지원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고,
- 또한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¹⁴⁾에서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두고, 관장과 사무분야의 책임자와 각 분야별 책임자(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사회복지사는 물론 각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한 전문자격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이 요구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4)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2. 8. 3., 2022. 6. 22.>

사회복지관의 인력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위치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도 및 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	19명 이상	13명 이상	12명 이상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 등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라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운영 성격의 사무에 해당하는 점, 그 운영에는 관련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운영이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에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 구 직영 운영시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관리업무 증가로 행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을 통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현재 서초구가족센터를 비롯한 구 관내 유사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민간위탁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사례발굴, 사례개입, 사회복지증진 등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도 일정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사무에 대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사업, 주민조직화와 지역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간 동일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및 복지자원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변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당 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례관리 및 상담,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활용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민간위탁에 따른 공공성 저하 가능성은 구의 지도·점검, 성과평가, 회계관리 및 위·수탁 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 수탁법인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평가기간 동안 사례관리 및 취약계층 발굴, 가족 및 노인 대상 서비스, 지역주민 프로그램, 민관협력과 지역자원 연계 등 복지관의 주요 기능을 전반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 수탁법인의 사업수행 역량과 운영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되고, 다만 평가과정에서 조직의 안정성, 외부자원 개발, 종사자 역량 강화 및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시된 만큼, 향후 위탁 운영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과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도점검 과정에서 계약·회계·인사 및 물품관리 등과 관련한 일부 미흡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은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사후적으로 시정된 것으로 보이나,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비 상당 부분이 공공재원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회계·계약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구에서도 사후 시정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향후 위탁기간 동안에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 지속에만 머무르기보다는 지역사회 복지환경과 주민의 욕구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 증가, 돌봄 수요의 다양화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복지관의 지역사회 거점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렇다면,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재위탁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제도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전문적·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그간의 사업수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 방식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재위탁 동의 이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위탁기간 중에는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를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여 재정·회계의 투명성, 조직운영의 안정성 및 복지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사회 복지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후원금이나 자체수입이 부족할 경우 복지관 운영을 위해 구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답>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로 운영비의 60%, 사업비의 대부분을 지원 받고 있으며, 연간 13~14억원 규모의 보조금(인건비·운영비·사업비)을 통해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어 있음. 후원금 및 자체 수입은 기본사업 외에 나눔사업이나 수혜 대상 확대 등에 활용되고 있어, 후원금 등이 부족하더라도 기본 운영을 위해 구비를 추가 지원해야 하는 구조는 아님. 다만, 구비를 추가 편성할 경우 지원 대상이나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질> 높은 성과평가 점수를 받은 기존 위탁업체가 차기 민간위탁 공모 시 가점을 받는지?

답> 재위탁 시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되므로 평가항목에 기존 위탁업체에 대한 가점이나 인센티브는 없음.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공개모집 참여 업체들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발표 및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평가표 기준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되어 있음.

-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세계사구성리내용 : 없음